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8
----------	-----

2021. 3. 23.(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심기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심기보 의원)

가. 제안사유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법률 인용 조항 개정(안 제10조)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특허법 → 「특허법」(안 제2조제3호나목)
 - 2인 → 2명(안 제6조)
 - 금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금액의 100분의 50(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용신안법」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 안 제 10조를 수정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2항
 - 조례의 관련 법령인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안 제2조제3호나목에서 ‘특허법’ → ‘「특허법」’으로,
 - 안 제6조에서 ‘2인’ → ‘2명’으로,
 - 안 제8조제1항 중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 ‘50을 처분보상금으로’ 같은조 제2항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 ‘50’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5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8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심기보,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오영탁, 육미선,
송미애

1. 개정이유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인용 조항 개정(안 제10조)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특허법 → 「특허법」 (안 제2조제3호나목)
 - 2인 → 2명 (안 제6조)
 - 금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금액의 100분의 50(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특허법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제102조”를 “같은 법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을 “50을 처분보상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u>특허법 제100조</u>에 따른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u>제102조</u>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p> <p>다.·라. (생 략)</p> <p>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u>한회계연도</u>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p> <p>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생 략)</p> <p>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u>2인</u>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u>특허법</u>」 제100조에 따른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u>같은 법 제102조</u>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p> <p>다.·라. (현행과 같음)</p> <p>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u>회계연도</u>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p> <p>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u>2명</u>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등록보상금) ① (생략)</p> <p>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u>지급하여야 한다.</u></p> <p>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u>처분보상금을</u>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도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u>해당하는 금액을</u>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u>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u></p>	<p>제7조(등록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u>지급한다.</u></p> <p>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을 <u>처분보상금으로</u>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도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u>처분보상금으로</u>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u><단서 삭제></u></p>

관련법령 발취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⑥ (생략)

-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삭제 <2018. 8. 28.>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